



김성진

빙그레(주)마케팅실  
포장개발팀 팀장

## PVC수축포장 규제에 대한 견해

Opinion of PVC Shrink Label

수축포장은 상품의 변조를 방지하고 포장 용기에 밀착되어 내용물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미려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한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장방법이다. 수축필름으로는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PVC 뿐만 아니라 OPS, PET 재질 등도 사용된다. 수축포장이 적용되는 제품은 드링크 요구르트병, 우유병, 탄산 및 과즙음료병 등 대부분 직접 인쇄가 불가능한 형태를 가진 제품들이다.

PVC 수축필름에 대한 규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단 3월까지는 규정을 위반시 이행명령만 받게 되고 4월부터 불이행시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당사를 비롯하여 PVC 수축필름을 사용하던 유가공업체들은 기존 설비에서의 OPS 필름 적용 시험을 마쳤고 규격도 변경하였다. 일부 업체에서는 일부나마 시장에 제품을 출시한 상태이다.

이미 법안이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다시금 그 과실을 논한다는 것이 어찌면 불필요한 행동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업에서 포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 45%

에 달하는 원가상승도 부담이려니와 PVC 수축포장 규제에 대한 정책의 혼선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또 다른 규제가 시행될 수도 있기에 회고하는 의미에서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고 환경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1. 경과

1) 1992. 9.26 환경처 고시 제 1992-57호 “포장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상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2항

- 폴리비닐크로라이드(PVC)를 사용하여 첨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질은 이를 포장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1993. 8.17 총리령 제 430호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2항

- 내용 상동

3) 1995. 10.18 환경부에서 한국유가공협회로 협조 공문 발송 “재활용 촉진을 위한 용기 재질 단일화 추진 협조”

- 용기에 부착되는 라벨의 재질은 가능한 한

용기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분리하기가 용이한(예 OPP 및 OPS 등)을 사용할 것 (예시: 우유, 요구르트의 PVC 라벨)

4) 1996. 2. 5 조선일보 보도

- 요구르트병 비닐 상표 재활용 장애

5) 1996. 2. 13 서울시 재활용과 간담회 개최

- 재활용 불가한 PVC 비닐 사용 중지

- PVC 비닐 포장 등 재활용이 안되는 용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관계 법규에 따른 절차 추진

- 1996. 10월 까지 개선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6) 1996. 10월 각 유가공 업체 개선 이행 완료 신고

- OPS 수축필름으로 규격 변경

- 생산성 저하 (20-30 %) 및 원가 상승 (50% 이상) 감수

7) 1997. 4월 삼성화성공업에서 환경부에 질의 (법규 재해석 요청)

8) 1997. 4. 17 환경부에서 삼성화성공업으로 회신

- PVC수축라벨은 PVC로 첨합(라미네이션) 혹은 도포(코팅)한 포장재(PVC 포장재 혹은 라벨이 접착 상태를 유지하여 원형대로 분리가 곤란한 복합재질)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

9) 1997. 4월 삼성화성공업에서 각 유가공업체로 회신 결과 송부

- 각 유가공업체 PVC 재질로 환원

10) 1998. 6.22 환경부 공고 제 1998-26호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 첨합(라미네이션)과 도포(코팅)외에 수축포

#### 장도 규제 예고

- 복합재질 포장재 사용 금지 예고

11) 1999.2.19 환경부령 제 68호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 제조자들은 폴리비닐크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첨합(라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1998년 6월의 입법예고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복합재질 포장재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냉동식품에 사용되는 PVC 수축포장은 허용

- 2001. 1.1부터 시행, 규정 위반시 3월까지 이행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 견해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필름 메이커의 질의에 대한 환경부와 서울시의 정책 혼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행 과정에서 운용의 묘는 발휘되지 못한 것 같다. 1996년 서울시의 강제 이행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각 유가공 업체의 포장 담당자들은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다. 대체 재질인 OPS 수축필름을 만들 수 있는 필름 메이커도 많지 않았고 모두 수입 원단이라 가격도 상당히 고가였다. 기존 PVC재질에 비해 슬림성이 떨어져 기계 트러블을 일으키기 일쑤였고 생산 속도도 많이 저하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재질을 변경하였다가 불과 몇 달만에 다시 기존 재질로 환원하였고 지금 또 다시 OPS 재질로 변경하여야 한다니 이 정책이 과연 심도



있게 검토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재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포장재를 규제한다면서 굳이 PVC 수축필름만 규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연 PVC 수축필름이 재활용에 지장을 주는가? 동일 재질의 용기와 수축필름을 사용한다면 재활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 수축필름 업계에 종사자의 말에 따르면 PVC 수축필름은 PET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자동 분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오히려 분리수거되는 공병의 양이 부족하여 100% 가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또한 재질이 틀릴 경우 수축필름을 벗겨낸 뒤 용기 부분을 적어도 2등급 정도의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던 것이 동일 재질을 사용하면서부터는 인쇄된 수축필름과 용기를 섞어서 재생원료를 만들다 보니 3등급 품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리의 대표적인 방법이 비중차에 의한 분리방법인데 동일재질이다 보니 분리가 안된다.

그렇다면 PVC 수축필름을 규제하는 이유가 소각의 어려움(다이옥신 방출) 때문인가? 하지만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번 규제에서 냉동식품용 PVC 수축포장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냉동식품용 수축포장과 유가공 제품의 수축포장의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냉동식품은 변조 방지 또는 유통 강도 증가 등의 목적으로 PVC 수축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용물을 먹기 전에 PVC 수축필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다. 따라서 용기와 수축필름은 분리되어 별도로 폐기된다. 하지만 유가공품의 경우는 인쇄 대용으로 사용하므로 소비자가 일부러 수축필름을 벗겨내지 않는 이상 계속 용기에 붙어 있게 된다. 이 때문

에 정부에서 PVC 수축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다. 비중차를 이용한 분리도 쉽지 않고 소각하자니 다이옥신이 발생되므로 아예 PVC 수축포장을 사용 규제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검토하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예 냉동식품처럼 소비자가 제품을 먹기 전에 벗겨내도록 수축 포장을 하면 어떨까? 이 경우 수축필름이 현재 보다 커지므로 약간의 재료비 상승은 있겠지만 원가 상승률 45%에 달하는 OPS 재질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분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장 재질의 환경문제는 원료 조달에서부터 최종 폐기물 처리까지 LCA평가(전과정평가)를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재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발생량이 많다거나 썩지 않는다' 또는 '제조 및 소각시 유해하다'라는 이유에만 근거해서 접근한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무조건적인 사용 규제보다는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 마련에 정부,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 2백억원씩 낭비하는 폐기물 분담금이 재활용 사업에 쓰일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의식수준을 높여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일단 금년 1월1일자로 규제는 시작되었다. 그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이번 시행령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정부도 기업도 포장재 제조업체도 소비자들도 결코 환경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서로 반목하거나 자기 집단의 논리로 강제하려하지 말고 대화와 토론으로 가장 발전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자. [ko]